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과 과제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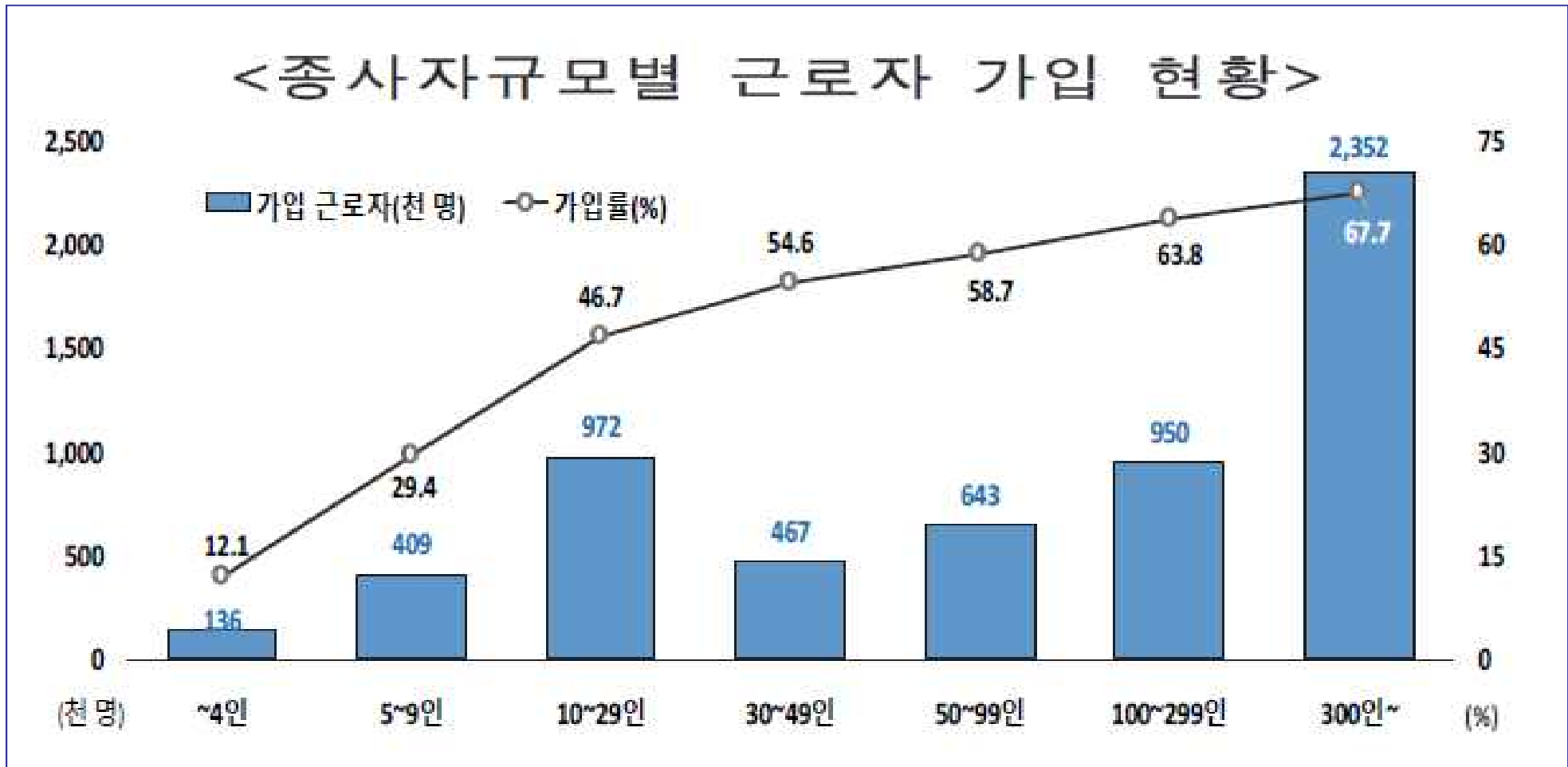
[목 차]

- I. 도입배경
- II.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내용
- III. 해외의 유사제도_일본 중퇴공
- IV. 향후 과제

“어느 병원의 퇴직연금 분투기”

√ 종사자 규모와 퇴직연금 가입률의 비례 관계

→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확산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자료 : 통계청(2020), p.12

√ 짧은 근속기간과 적은 적립금

→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퇴직연금 모델 필요

구분	평균연령 (세)	평균근속년수 (년)	평균 기준급여액 (원)	평균 적립금평가액 (원)	인원(명) (구성비)
17~29세	25.56	1.37	1,703,501	2,477,270	29,424 (15.34%)
30~39세	34.77	2.81	2,062,409	4,644,081	50,893 (26.54%)
40~49세	44.35	3.49	2,138,724	5,688,423	61,050 (31.84%)
50~59세	54.08	4.10	2,170,875	7,120,244	36,466 (19.02%)
60~70세	63.46	3.83	1,824,397	6,214,281	13,931 (7.26%)
전체	42.16	3.13	2,032,953	5,241,000	191,764 (100%)

자료 : 성주호 외(2016), p.11

√ 전체 평균보다 더 보수적인 적립금운용 행태

→ 기대수익률 제고가 가능한 방안 모색 필요

구분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현금성자산	합계
공단(A)	98.55%	0.30%	1.15%	100%
전체평균(B)	78.80%	18.60%	2.60%	100%
차이(A-B)	+19.75%	-18.30%	-1.45%	-

주 : 2016년 6월말 기준이며, 전체평균은 DC형 적립금운용 방법을 말함.

자료 : 공단은 성주호 외(2016), 전체평균은 고용노동부 자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내용】

취지	“근로복지공단이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 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이하 중퇴기금) 도입”	운영	기금제도운영위원회 를 두어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운용계획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	급여	급여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23조의 12)
적립금	“ 둘 이상 ”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 공동의 기금 ”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근퇴법 2조 14호)	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음 (23조의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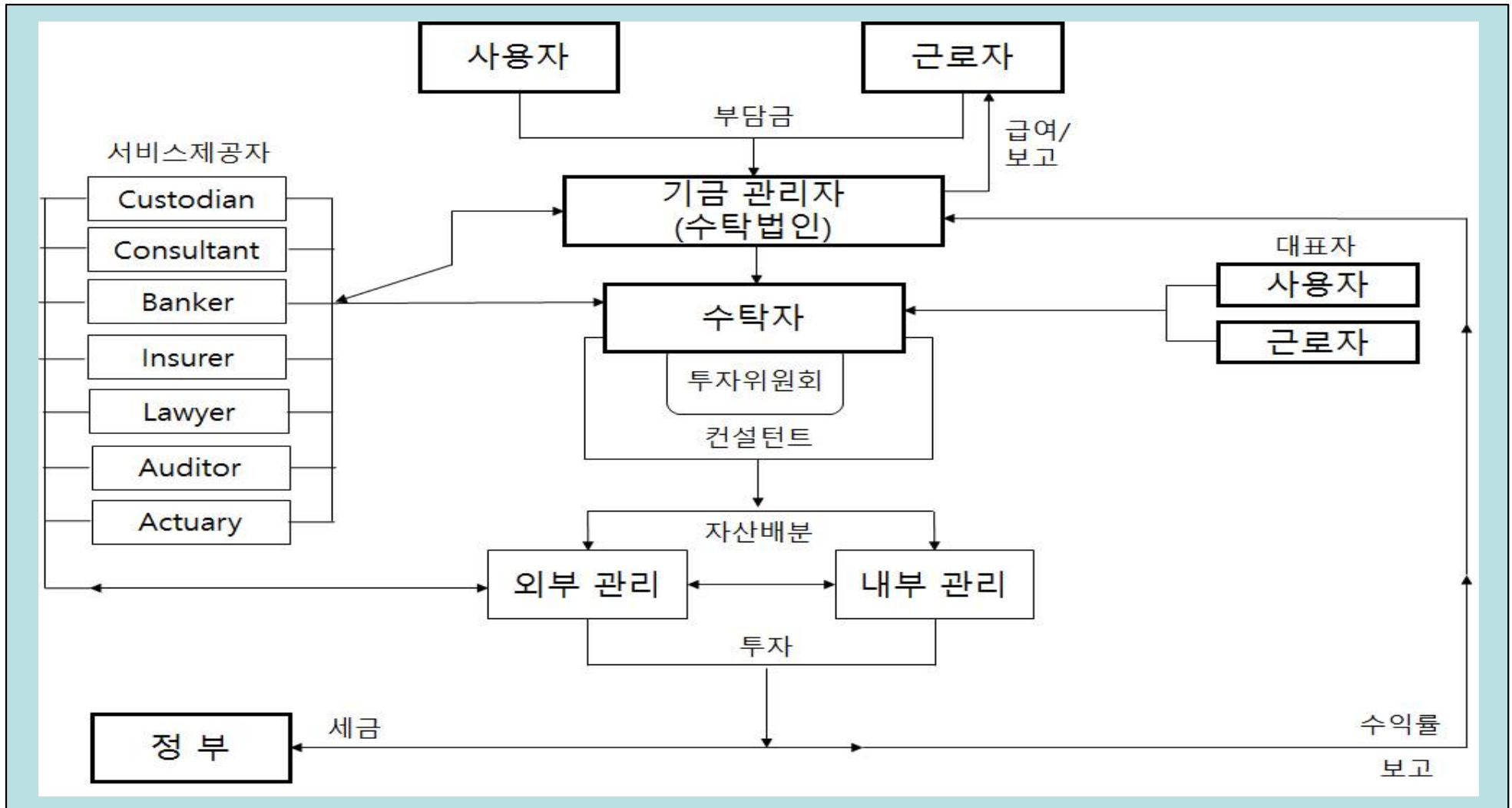
자료 : 송홍선(2020)

【중퇴기금의 특징 ① : 지배구조_기금형】

구분	계약형	기금형
연금관리 형태	금융회사에 일괄위탁	독립적인 퇴직연금기금 설치
관리 및 운영 주체	금융회사 (운용관리/자산관리 기관)	기금운용의 외부위탁
주요 의사결정자	사용자	연기금위원회 (노사동수)
가입자 참여	근로자 직접투자(DC)	기금운영 전반 적극 참여 근로자 직접투자(DC)
핵심 감독대상	금융회사	개별 퇴직연금기금

자료 : 류건식 외(2013)을 참고해 작성

【중퇴기금의 특징 ① : 지배구조_기금형】



자료 : Clark(2010), p.79를 참고해 작성

【중퇴기금의 특징 ① : 지배구조_기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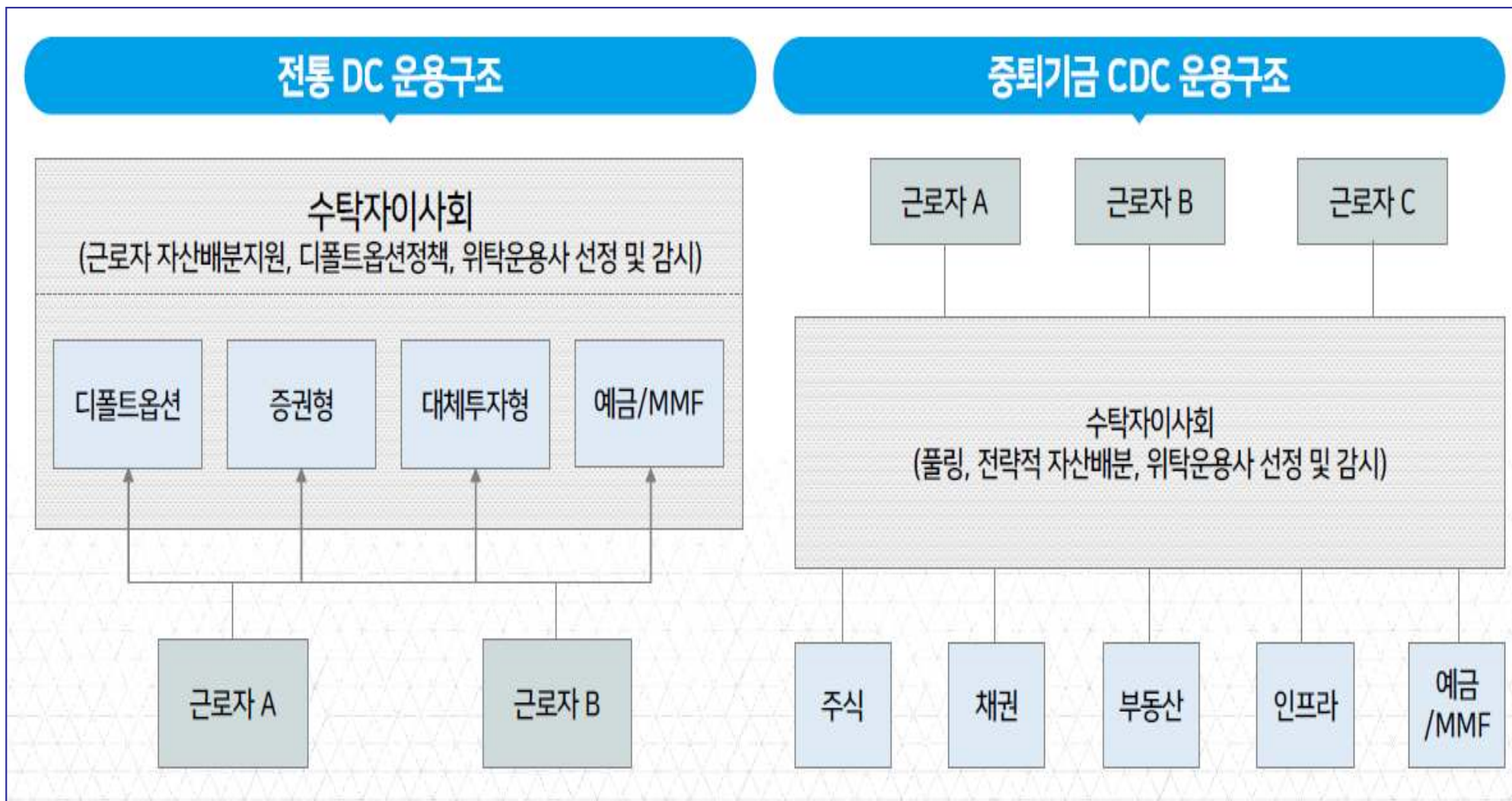
- ✓ 운영위원회 구성: 노, 사, 연기금 전문가, 정부 포함 10-15인
 - 적립금 운용 및 관리 관련 소위원회

중퇴기금 관리운영체계



자료 : 국회 근퇴법 검토보고서(2020), 송홍선(2020)에서 재인용

【중퇴기금의 특징 ② : 적립금운용_집합운용】



자료 : 송홍선(2020)

【중퇴기금의 특징 ③ : 급여지급_공동손익 방식】

제23조의 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인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이 밖에 급여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퇴기금의 특징 ③ : 급여지급_공동손익 방식】

급여정책 설계의 원칙

투자성과 기반
급여지급

- ✓ 기금 운용의 성과(운용수익률)를 매년 가입자에서 배분함으로써 DC형에 가까운 CDC 제도의 기본원칙(성과에 대한 자기책임)을 준수

가입자간 급여
형평 추구

- ✓ 개인계정 ⇔ 집합운용 ⇔ 공동손익부담원칙에 따라 상생유보금계정 운영, 가입자간 세대간 급여 격차를 완화, 가입자 형평(solidarity) 추구

장기가입 유도

- ✓ 급여정책에 가입자들의 장기 가입 유도 위한 유인체계(incentive) 설계, 중퇴기금의 제도적 재정적 안정 추구

자료 : 송홍선(2020)

【중퇴기금의 특징 ③ : 급여지급_공동손익 방식】

급여정책 방안

- ✓ 계정: 일반계정, 상생유보금계정
- ✓ 지급방식:
 - 매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운용수익율은 유보금 적립 위한 유보율을 제한 수익률
 - 3년 초과 가입 근속자 대상 최소수익률 보장

일반계정	기금을 집합운용 하는 일반계정. 일반계정은 가입자 각자의 가상계정의 합으로 구성. 매년말 순운용수익이 가입자 가상 계정으로 배분
상생유보금 계정	위기시 최소수익률 보장을 위해 중퇴기금 내 공동계정으로 내면 유보금을 적립 적정 유보금 이상 적립시 운영위원회에서 유보금 배당정책 수립(부가급여 또는 지속적립)
특정 t시점 계속 근로자 퇴직자산 잔액	$적립금_t = 적립금_{t-1} [1 + (운용수익률_t - 유보율_t)]$
근속 1년 이상 3년 이하 퇴직자 퇴직자산	정상시장: $적립금_{t-1} [1 + (운용수익률_t - 유보율_t)]$ 비정상시장: $적립금_{t-1} [1 + 운용수익률_t]$ * 비정상시장이므로 운용수익률 < 최소수익률
근속 3년 초과 퇴직자	정상시장: $적립금_{t-1} [1 + (운용수익률_t - 유보율_t)]$ 비정상 시장: $적립금_{t-1} [1 + 최소수익률_t]$

자료 : 송홍선(2020)

【중퇴기금의 특징 ④ : 비용부담_사용자+국가】

제23조의 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중퇴기금의 특징 ⑤ : 운영주체_공공기관】

<근퇴법 제4장의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 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4.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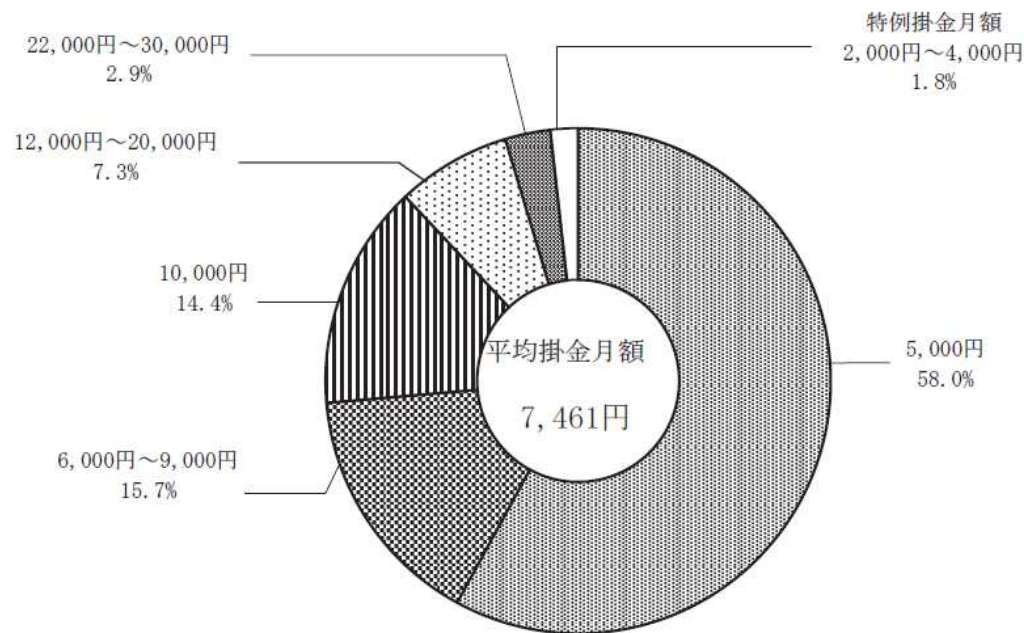
【제도 개요】

- ▣ **성격** :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1959년)에 의해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하는 사외적립 퇴직급여제도
 - 중소기업 사용자의 상호부조 정신과 국가의 지원으로 퇴직급여제도 확립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 도모, 중소기업 진흥에 기여
- ▣ **운영주체** : 독립행정법인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
- ▣ **가입범위** : 산업별 근로자수/자본금에 따라 상이
 - 소매업 : 상용근로자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사업장
 - 도매업 : 상용근로자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사업장
 - 서비스업 : 상용근로자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사업장
 - 제조업/건설업 등 일반업종 : 상용근로자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

【제도 개요】

■ 보험료 : 전액 사용자 부담

- 근로자별 월 부담액은 16종 (5000엔 ~ 30000엔)
- 동일 사업장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특례부담액 3종 (2~4000엔)



월납입액 평균 7,461엔

58%가 5000엔 선택

가입자수 : 347만명

운용자산 : 4.9조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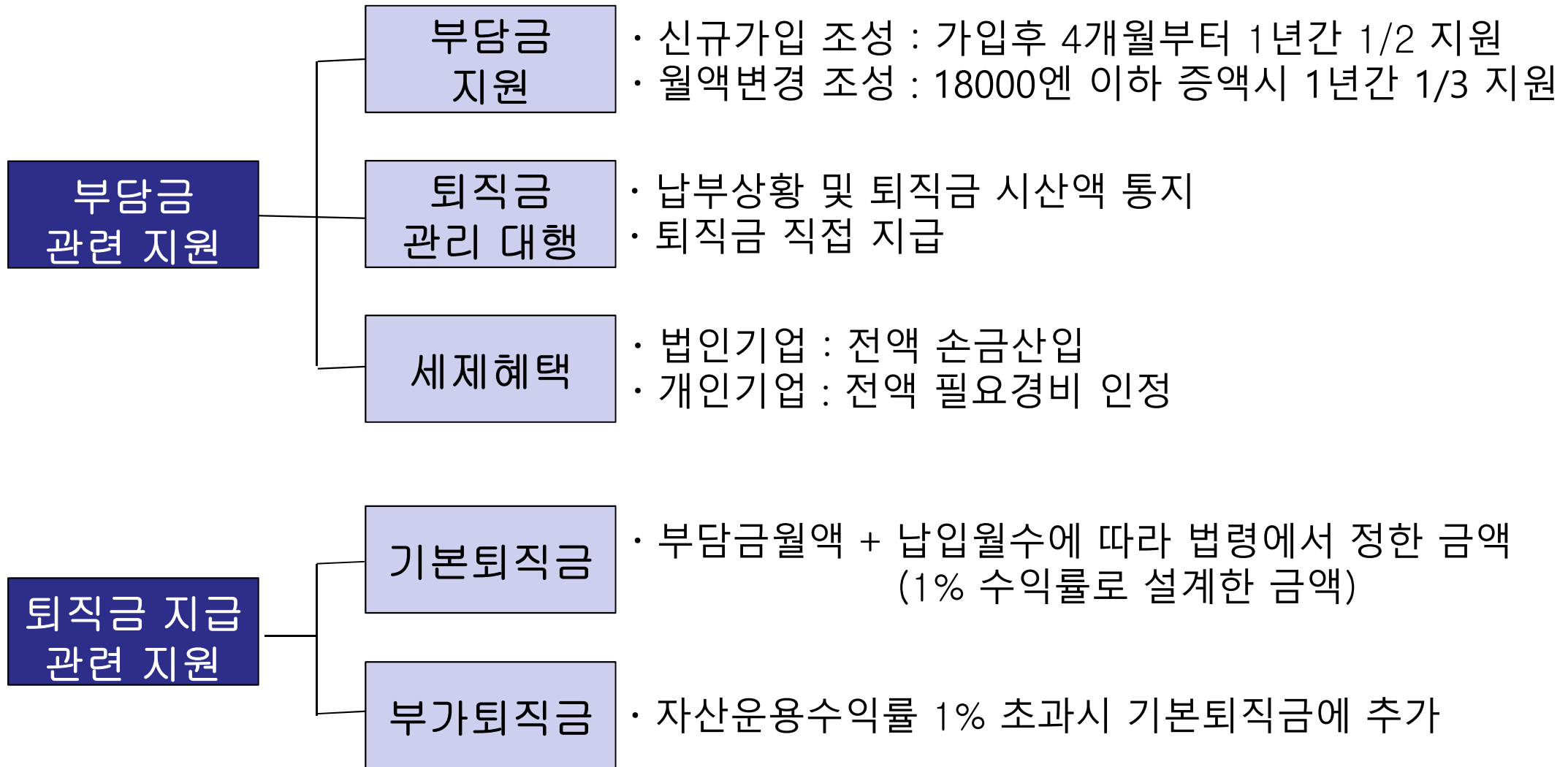
(2018년 9월 현재)

【제도 개요】

▣ 퇴직급여 수령 : 일시금 지급이 기본, 단 아래 조건 충족시 연금수령 가능

퇴직일 기준 60세 이상	수령 기간	전액분할 수령방식	일부분할 수령방식	수령 회수	분할지급률
	5년	퇴직금액 80만엔 이상	일시금 20만엔 이상 분할 80만엔 이상	20회	51/1000 + 후생노동성 지급률
10년	퇴직금액 150만엔 이상	일시금 20만엔 이상 분할 150만엔 이상	40회	26/1000 + 후생노동성 지급률	

【국가의 지원】



【공제기구의 운영구조】

▣ 공제기구의 법령상 기본 지배구조

√ 임원 + 운영위원회 + 자산운용위원회

√ 임원 : 이사장, 감사 2인, 4명 이내의 임원

√ 임원 역할 : 법령 및 장관의 처분, 공제기구의 업무방법서 및 규칙 등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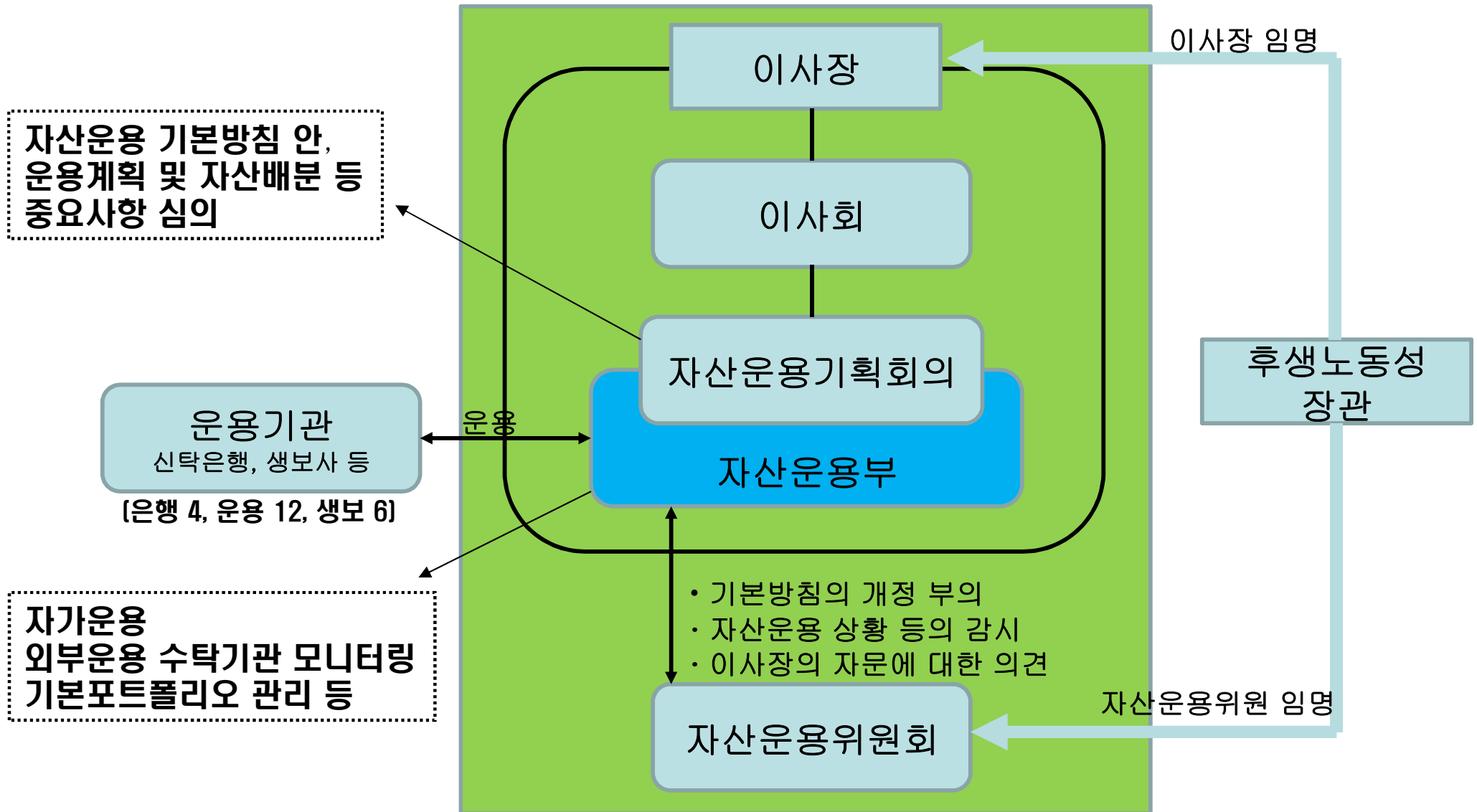
√ 운영위원회 : 공제운영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장관이 임명(20명 내)

√ 운영위원회 역할 : 공제규정과 업무방법서 변경, 연간 및 중기계획 수립,
이사장 자문 응대, 필요한 사항의 건의 등

√ 자산운용위원회 : 경제/금융 고도의 식견을 가진 자 및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

√ 자산운용위원회 역할 : 자산운용 기본방침 작성 및 변경 심사, 자산운용 감시 등

【공제기구의 자산운용 관리체제】



【공제기구의 자산운용 기본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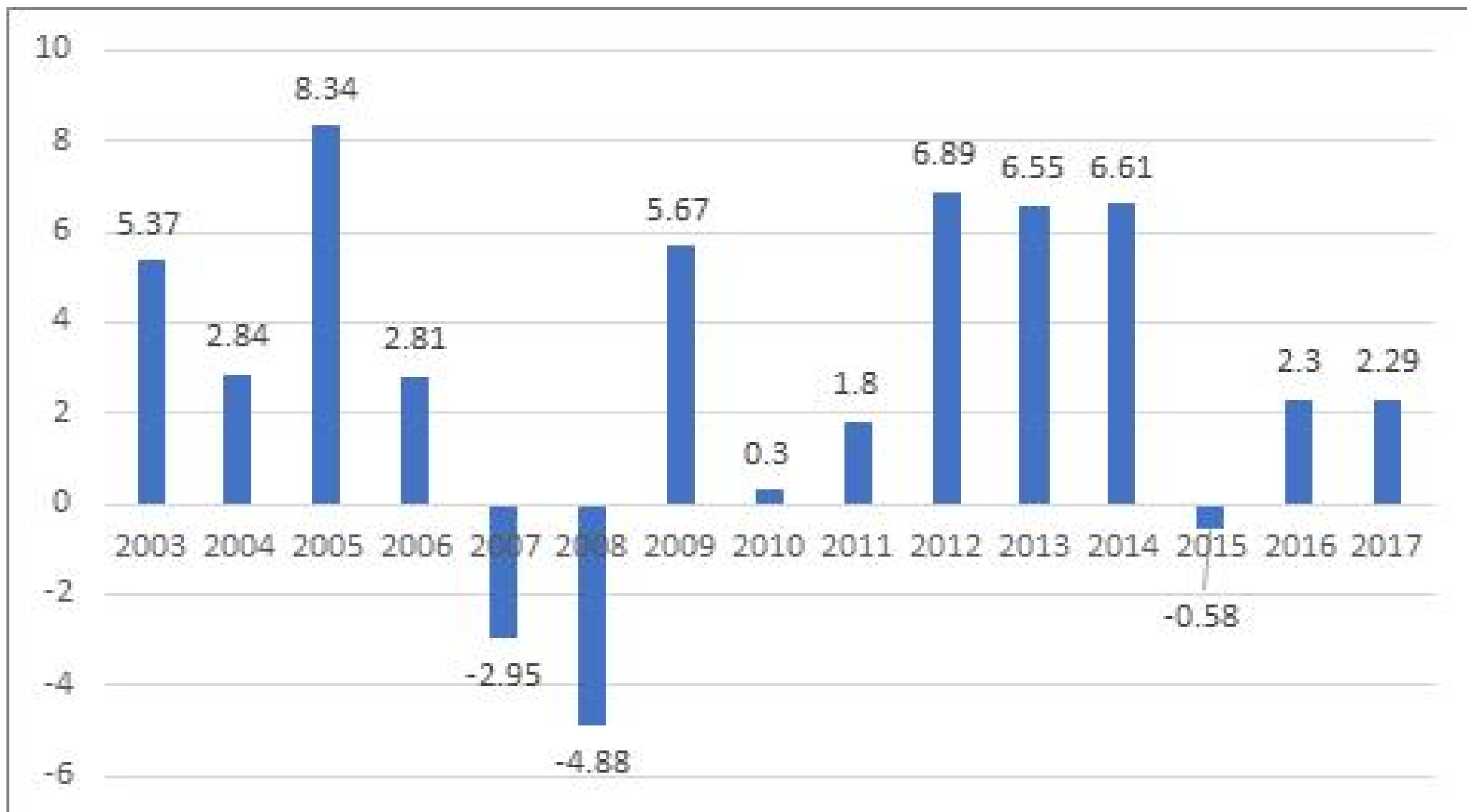
- ▣ **목적** :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가는데 필요한 수익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
- ▣ **목표** :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중기적으로 중퇴공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수익률을 최소한의 리스크로 확보하는 것
- ▣ **기본포트폴리오** : 투자대상 자산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를 고려
 - 매년 검증하며, 제 조건 변한 경우 기본 포트폴리오 변경

구분	국내채권	국내주식	외국채권	외국주식	합계
자산배분	79.6	7.2	9.9	3.3	100.0
과리허용폭	±3.0	±2.0	±1.0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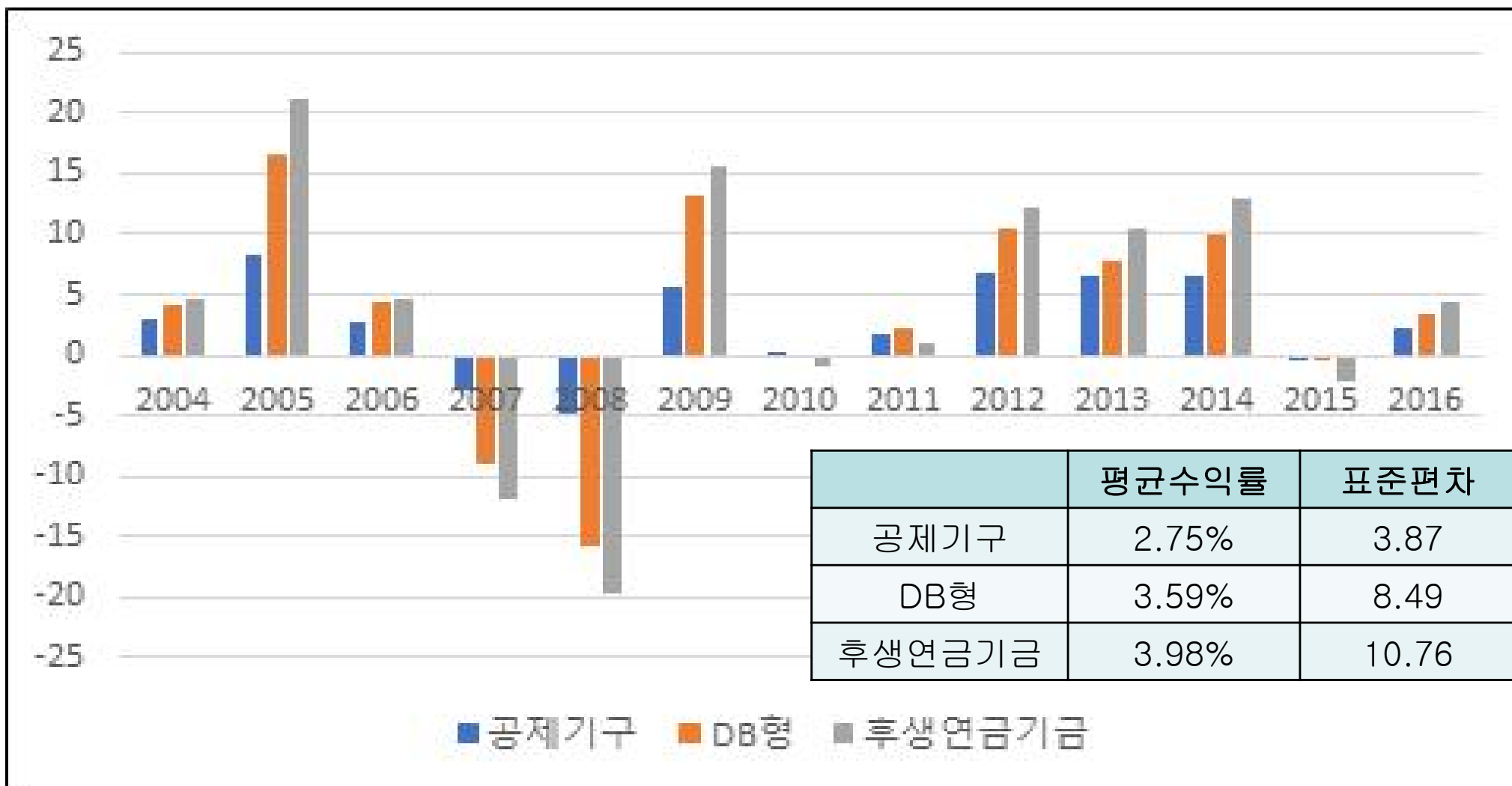
【공제기구의 자산운용 현황】

구분		자산(억엔)	구성비(%)	수익률(%)
자가운용	유가증권	25,588	52.80	0.58
	예금	1,059	2.18	0.00
	소계	26,647	54.98	0.57
위탁운용	금전신탁	20,186	41.65	4.69
	생명보험자산	1,629	3.36	1.32
	소계	21,815	45.02	4.42
합계		48,462	100.0	2.29

【공제기구의 수익률 추이】



【공제기구 · DB형 · 후생연금기금 수익률 비교】



【중퇴공과 중퇴기금 비교】

구분	중퇴공제도	중소 기금형(안)
법 체계	· 별도의 법 마련	· 근퇴법 내 4장의 2 신설
도입 배경	·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	·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도입 목적	· 중소기업 퇴직급여제도 확산	· 적립금운용 개선(?)
부담금 납입	· 사용자만 납부	· 사용자 + α (근로자)
국가의 역할	· 부담금지원, 퇴직금관리, 최저이율 보장	· 부담금 및 기금 운영비용 일부 예산 범위 내 지원
운영 주체	· 중소기업퇴직금공제기구	· 근로복지공단
핵심 의사결정기구	· 운영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 20인 이내 · 자산운용위원회 : 5인 이내	· 운영위원회 : 10~15인
자산운용 방식	· 자산운용 기본방침에 따름 · 자가운용과 위탁운용 병행	· 시행령에 위임

【국가지원의 범위 및 기한】

▣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기간에 따라 국가지원의 범위는 달라짐.

– 지원대상 :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에
초점을 둘 필요

•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후생활보장 = f(가입률, 적립금액)**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제안이유 중에서)

– 지원규모 : 가용예산, 시장에 대한 영향, 가입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기간 : 일정한 기간 or 제도 유지 내내

• 일정 기간 : 3년 or 의무화 시점까지

【퇴직연금 의무화 일정】

기업규모	의무화 시점
100명 이상	2022.10월
30명 이상 100명 미만	2024.04월
10명 이상 30명 미만	2025.10월
5명 이상 10명 미만	2027.04월
5명 미만	2028.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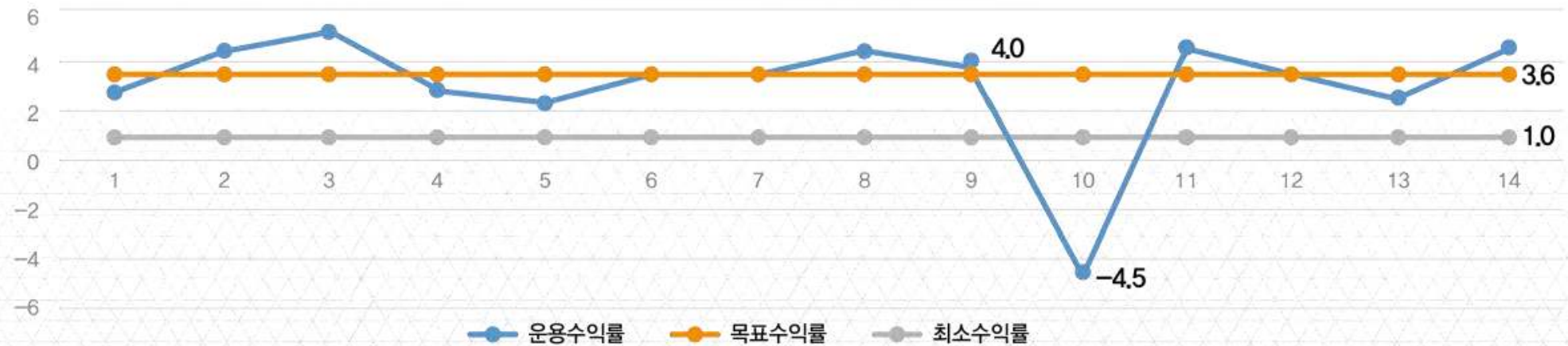
주 : 1) 기업규모는 상시 근로자 기준

2) 의무화 시점은 공포일을 2021.4.1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것임.

【제한적 최소수익률 보장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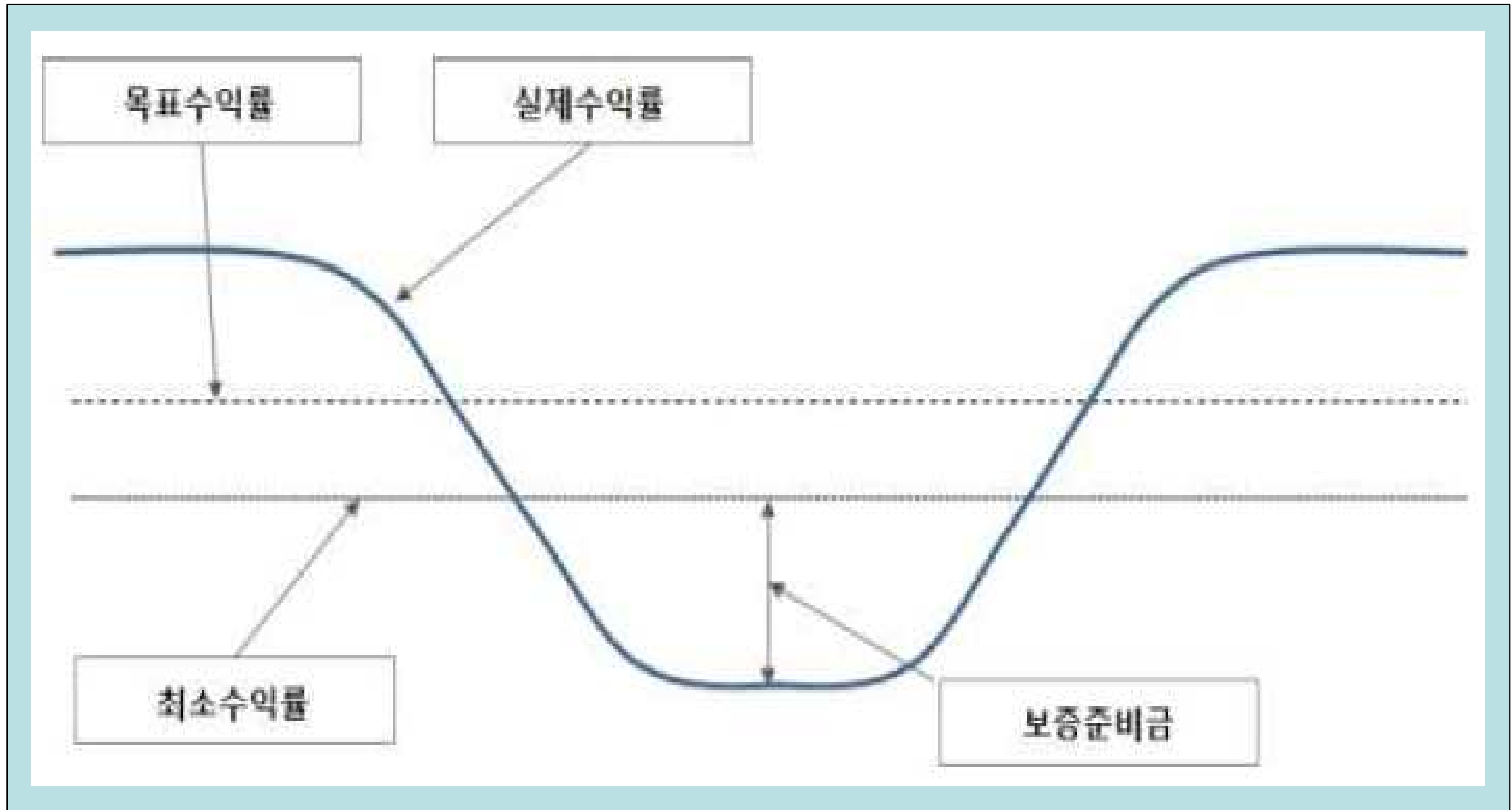
- ☑️ 보장 방식: 금융위기 등으로 마이너스 수익률 발생 시점(아래 그림 10년 차에 4.5% 손실)에 최소수익률 (1%) 보장
- ☑️ 보장 대상: 해당 년도 퇴직자(예시, 가입자 중 10년 차에 퇴직하는 퇴직자)
- ☑️ 장점: 퇴직자 한 해 제한적 최소수익률 보장 통해 과도한 유보율 부담 완화
 - 평시에는 기대수익률(3.6%)이 최소수익률(가령 1%) 상회하기 때문에, 평시 자산배분 기대수익률 추구하면서 가입자간 형평을 급여정책에 반영

최소수익률 보장방식: 예시



자료 : 송홍선(2020)

【제한적 최소수익률 보장 방법】



자료 : 성주호 외(2016)

【감독방안】

▣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특성을 감안한 감독방안 모색 필요

- 고용노동부의 중퇴기금에 대한 감독 외 퇴직연금기금의 다차원적 주인·대리인 문제가 중퇴기금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 실효적인 감독방안 필요

- 특히 대리인·대리인 간의 문제가 주인인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한 감독 필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제23조의16)

- 중퇴기금의 마이크로 지배구조 방안 모색도 필요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에서의 주인-대리인 문제】

구분	주인	대리인	주요 행위	계약 및 보상
Type-I	가입자	사용자	사업자(기금) 및 수탁자 선택	None
Type-II	가입자	수탁자 (사업자)	기금운영, 포트폴리오 선택, 비용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가 자신의 보수와 신탁비용 결정 · 극단 조건하 규제당국이 수탁자 교체
Type-III	수탁자	자산 컨설턴트	포트폴리오 선택, 자산배분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으로 수탁자가 교체 · 수수료(AUM%)
Type-IV	수탁자	기금 매니저	포트폴리오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으로 수탁자가 교체 · 수수료(AUM%)

자료 : Drew & Stanford(2003), 손성동(2018)에서 재인용

감사합니다!!!